

[별표 5] <개정 2004.4.9>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료율기준(제49조관련)

1. 기준요율

(단위 : %)

구 분 \ 대상액		10억원	20억원	50억원	100억원	200억원	500억원	1000 억원	2000 억원
측량 · 설계	기본조사	2.34	2.19	2.01	1.86	1.72	1.54	1.40	1.28
	세부설계	3.79	3.60	3.30	3.05	2.81	2.53	2.34	2.16
공사감리		8.25	8.00	7.57	7.14	6.74	6.24	5.83	5.40
사업관리		1.70	1.57	1.42	1.32	1.22	1.10	1.02	0.95

2. 적용방법

- ①기본조사·세부설계·공사감리의 요율과 대상액은 순공사비와 자재대의 합계 금액(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으로 한다.
- ②사업관리의 요율과 대상액은 순공사비·자재대·용지매수보상비의 합계금액(부가가치세 및 평가비용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 ③기본조사의 요율과 대상액은 기본계획수립의 결과에 따라 적용한다.
- ④세부설계의 요율과 대상액은 세부설계의 결과에 따라 적용한다.
- ⑤공사감리 및 사업관리의 요율과 대상액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을 적용한다. 다만, 공사량의 증감 등에 따라 시행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 그 예정가격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된 계약금액에 낙찰율(계약금액÷예정가격)을 적용(조정 계약금액÷낙찰율)하여 산정한다.
- ⑥대상액 중간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
- ⑦대상액이 2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한계농지 정비사업, 수산업생산기반정비사업 및 농어촌용수수질개선사업은 실제 소요액을 산정하여 적용한다.